

정보 집합물 침해 방지에 관한 법안 ‘H.R.2652’

번역 : 조소연(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센터 정책연구과)

데 이터베이스는 대부분 저작권법의 편집저작물에 근거하여 그 보호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 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소재의 선택 · 배열의 창작성’ 규정을 만족할 것이 요구되므로 창작성 규정을 만족시킬지 못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문제는 소재의 선택 · 배열의 창작성 여부가 인정될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특히 미국의 경우 Feist 판결에서 ‘이마의 땀’ 이론을 부정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을 인정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있어 창작성 기준이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겨났으며,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있어서 그 보호 대상으로서 ‘소재의 선택 · 배열의 창작성’ 유무보다는 오히려 그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투여된 인적, 물리적, 시간적 자원의 투자를 보호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방대한 자료를 직접 일일이 수집, 가공,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나 디지털 저작물의 특성상 이미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대상자료를 복제하여 제2, 제3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것은 매우 용이하므로 만일 제2, 제3자의 복제 행위를 적절히 제한하지 않는다면 최초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유럽에서는

1996년 EC 데이터베이스 지침서가 채택되기에 이르렀고 미국의 경우도 1996년 무어헤드 의원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안(H.R.3531)이 의회에 상정되었다.

EC 데이터베이스 지침서나 H.R.3531 법안은 저작권법외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Sui Generis)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EC 데이터베이스 지침이 채택된 반면 미국 H.R.3531법안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정보 독점 우려,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경쟁력 감소, 데이터베이스 사용료의 증가 등의 반대 주장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특히 ISP들의 반대가 심하였는데,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들이 데이터베이스의 불법 복제 및 기타 침해를 금지해야 할 책임을 떠안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EU 각국이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을 채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 콘텐트 강국인 미국이 상호주의 요건의 적용에 의한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보호 법안 마련이 필요해진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 미국 의회 제105차 회기에 또다시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대한 새로운 법안(H.R.2652)이 상정되었는데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정보 집합물에 대한 부정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법전 제17편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H.R.3531 법안과는 일견 유사해 보이나 H.R.3531 법안은 정보의 집합물에 대해 배타적인 재산권인 새로운 권리(Sui Generis)를 부여할 것을 의도한 반면 H.R.2652에서는 그 보호에 있어서 종전과는 다른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

는 저작권 사무국의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미 제안된 바 있었는데 부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law)의 부정이용(misappropriation) 부분을 근거로 하여 최소한의 접근을 시도한다.

이 법안은 그 집합물의 제작자의 시장에 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정보 집합물의 전부 혹은 실질적인 부분을 상업적으로 추출 또는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그 제작자가 입은 손해액 뿐만 아니라 피고가 획득한 추가적인 이익, 그리고 재판 비용, 변호사 수수료에 대하여 그 정보 집합물 제작자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때에 따라 형사 책임도 질 수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창작성의 보호보다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보호함으로써 이를 더욱 장려하겠다는 점, 손해에 상관없이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기 보다는 위해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접근하겠다는 점, 그리고 부정경쟁법의 형태라는 점이다. 보호기간은 EC 데이터베이스 지침서와 마찬가지로 15년이다.

현재 H.R.2652는 미하원을 통과한 상태다. MCI, Dun & Bradstreet, Nescape, AT&T 등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반대하는 측의 로비 활동도 만만치 않으므로 앞으로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다음은 하원을 통과한 H.R. 2652 정보 집합물 침해 방지법안 전문이다.

SECTION 1. 제목

이 법은 '정보 집합물 침해 방지법'으로 칭한다.

SECTION 2. 정보 집합물에 대한 부정이용

미국 법전 제17편(이하 Title 17로 칭함)은 다음의 새로운 장을 본문 마지막에 추가 시킴으로써 수 정된다.

제12장 정보 집합물에 대한 부정 이용

제1021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정보 집합물

'정보 집합물' 이란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정보의 개별적인 항목들을 한 장소에 혹은 한 출처에 함께 가져올 목적으로 수집되고 구성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

'정보'란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집되고 구성될 수 있는 사실, 데이터, 저작물 또는 기타 무형의 자료를 말한다.

(3) 잠재적인 시장

'잠재적인 시장' 이란 제1202조의 보호를 주장하는 사람이 현재 그리고 장래에 이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정보 집합물을 구체화하는 유사한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상업

'상업'이란 의회에 의해 법적으로 규제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상업을 의미한다.

(5) 제품 또는 서비스

정보 집합물을 구체화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는 디지털 온라인 통신을 송달, 발송, 회송, 전송, 저장하기 위해 혹은 디지털 온라인 통신에 대한 연결에 의 접근을 제공하고 제공받기 위해 수집·구성되거나 유지되는 정보 집합물을 구체화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제1202조 부정이용에 대한 금지

상당한 정도의 자금 혹은 기타 자원을 투자함으로써 타인에 의해 수집·구성되거나 유지되는 정보 집합물을 구체화 하고 있고, 그 타인 혹은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한 승계인에 의해 제공되거나 제공되도록 의도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그 정보 집합물의 전부 혹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관없이 실질적인 부분을 추출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제1206조에 정해진 구제 조치에 대해 그 타인 혹은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한 승계인에게 책임이 있다.

제1203조 이용되는 행위

(a) 정보의 개별적인 항목과 비실질적인 부분

본장의 어떠한 규정도 정보의 개별적인 항목 또는 기타 정보 집합물의 비실질적인 부분 그 자체를 추출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의 개별적인 항목 그 자체가 제1202조의 정보 집합물의 실질적인 부분으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이다. 단, 본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12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정보 집합물의 개별적인 항목이나 비실질적인 부분을 반복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추출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b) 다른 수단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의 수집 혹은 이용

본장의 어떠한 규정도 상당한 자금 혹은 기타 자원의 투자로 타인에 의해 수집·구성되거나 유지된 정보 집합물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아닌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얻어진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c) 검증을 위한 정보의 이용

본장의 어떠한 규정도 단지 그 사람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수집·구성되거나 유지되는 정보인지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어떠한 항목이나 구성에 속해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추출하거나 이용된 정보는 추출되고 이용된 정보 집합물에 대한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시장에 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용되지 않을 것이다.

(d) 비영리적인 교육, 과학, 조사를 위한 이용

본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1202조에 언급된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시장에 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비영리적인 교육, 과학 혹은 조사 목적을 위해 정보를 추출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e) 뉴스보도

본장의 어떠한 규정도 뉴스의 수집·배포·논평

을 포함한 뉴스 보도가 유일한 목적일 경우 그 정보를 추출하고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다만, 추출 또는 이용된 정보가 시간적 특성에 민감한 경우, 특정한 시장에 배포되기 위하여 뉴스 보도 항목으로 수집된 경우, 아직 시장에 배포되지 않은 경우, 추출 또는 이용이 해당 시장내의 직접적인 경쟁의 목적을 위해 착수된 일관된 방식의 부분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f) 복사본의 양도

본장의 어떠한 규정도 정보 집합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법적으로 복제한 특정한 복사본의 소유자가 그 복사본의 소유를 매각하거나 기타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제1204조 제외

(a) 정부기관의 정보 집합물

(1) 제외

본 장에서의 보호는 고용, 대리, 이용허락의 범위 내에서의 고용인, 대리인 혹은 배타적인 이용허락을 받은 자들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방에 관계없이 정부기관에 의해서 혹은 정부기관을 위해서 수집·구성되거나 유지된 정보 집합물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단, 이 항에서 어떠한 규정도 대리 혹은 이용허락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서 대리인, 이용허락 받은 자에 의해서 수집·구성 또는 유지된 정보나, 교육 또는 학문에 참가하는 과정에 연방, 주법상의 교육기관에 의해 수집·구성 또는 유지된 정보에 대한 보호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2) 예외

본조 본항 (1)호상의 제외는 다음에 의해 수집되고 배포될 것이 요청되는 정보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A) 본 title 의 제1205조 (g)항를 조건으로, 1934년 증권거래소법하에서, 공인받은 증권거래소, 등록된 증권 협회, 등록된 증권정보 가공업소에 의해, 또는

B) 본 title의 제1205조 (g)항를 조건으로, 상품거래소법하에서, 거래 시장에 의해

(b) 컴퓨터 프로그램

(1) 확대되지 않는 보호

본조 본항의 (2)호를 조건으로, 정보 집합물의 제조, 생산, 운영 혹은 유지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뿐 아니라 그 운영에 필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어떠한 요소를 포함해(단 이에 한하지 않는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본 장의 보호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2) 구체화된 정보 집합물

그렇지 않았다면 본 장의 보호대상이 되었을 정보 집합물은 그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구체화되었다고 해서 보호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 1205조 다른 법과의 관계

(a) 영향 받지 않는 다른 권리들

본조 (b)항을 조건으로, 본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저작권법상의 권리, 제한, 조치에 대해서, 혹은 특히, 상표, 의장, 독점금지, 영업비밀, 사생활, 공적 문서에의 접근, 그리고 계약법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정보에 관계된 어떠한 다른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b) 주법에 대한 우선권

본 장이 시행되는 때에는, 본 장의 대상물에 관계된 제1202조에 언급된 권리에 상당하는 모든 권리는 연방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일반법 혹은 주법하에서는 그와 같은 대상물에 대해 어떠한 상당하는 권리도 부여되지 않을 것이다. 상표, 의장, 독점규제, 영업비밀, 사생활, 공적문서에의 접근, 그리고 계약법에 관한 주법은 본항의 목적을 위해 상당하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c) 저작권법과의 관련

본 장에서의 보호는 정보 집합물의 전부 혹은 일

부에 포함되거나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저작물에 대해서, 공정사용을 포함해서(단,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저작권 보호 또는 제한에 대해 독립적이며, 또한 범위, 기간, 저작물성 또는 그 존재에 대해 영향을 미치거나 확장하지 않는다. 본 장은 정보 집합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 대해 정보 집합물 그 자체로서의 결과물보다도, 그리고 본 title의 어떠한 다른 장에서 그 결과물에 적용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d) 독점금지

본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품과 서비스가 공중에 제공되는 방법에 대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단독 제공자에 관한 것들을 포함하여, 연방, 주법상의 독점금지법에 의해 부여된 구속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한하지 않는다.

(e) 이용허락

본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정보 집합물의 이용에 대해서 이용허락 혹은 기타 다른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하는 당사자의 권리에 제한하지 않는다.

(f) 1934 통신법

본 장의 어떠한 규정도 1934년의 통신법의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전화번호부를 발행할 목적을 위해, 1934 통신법의 제22조 (f)항 (3)호에 정의되어 있듯이, 가입자 목록 정보를 어느 누군가가 추출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g) 1934 증권거래소법과 상품거래소법

본 장의 어떠한 조항도 다음에 대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1) 1934년 증권거래소법 혹은 상품거래소법의 규정의 적용

(2) 1934년 증권거래소법의 요구 조건에 준하여 수집되거나 진행되거나 배포되거나 발행된 증권을 위한 시세와 매매에 관계된 공공적인 성격의 정보

(3) 1934 증권거래소법하에서의 개인받은 증권거래

소, 등록된 증권협회 혹은 등록된 정보 가공업소의 의무 사항들 또는

(4) 연방증권관리위원회 혹은 상품선물관리위원회의 관할권 또는 권한

제1206조 민사적 구제

(a) 민사소송

제1202조의 침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는 문제 가 된 액수에 상관없이 적절한 미국의 지방법원에 그 침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주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그러한 기관에 대한 소송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b) 일시적 및 영구적 금지명령

본 조에 따라 제기되는 민사 소송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은 제1202조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일정한 조건에 기초하여 일시적 및 확정적 금지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금지명령은 명령을 받은 당사자에게 미국내 어디에서나 행사될 수 있고, 그 당사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미국의 지방법원에 의해 법정모욕 혹은 기타 절차에 의해 집행될 수 있다.

(c) 압류

본 조에 해당하는 소송이 계류중인 동안에는 언제든지, 법원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조건하에서, 제1202조를 침해하여 추출되거나 이용되는 정보 집합물의 내용의 모든 복제물과 그러한 복제물을 제작하는 수단인 모든 원판, 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또는 기타 물건에 대한 압류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제1202조의 침해를 판시하는 최종 판결이나 명령의 일부로서, 제1202조를 침해하여 추출되거나 이용되는 정보 집합물 내용의 모든 복제물과 그러한 복제물을 제작하는 수단인 모든 원판, 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또는 기타 물건에 대한 변경 혹은 폐기를 명할 수 있다.

(d) 재정적 구제

본 조에 의해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제1202조의 침해가 입증이 된 때에는, 원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 그리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계산하는데에 고려되지 않은 피고가 얻은 이익을 회복할 권한을 가진다. 법원은 이러한 이익이나 손해를 직접 평가하거나, 그의 지시하에 평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익을 평가함에 있어 원고는 단지 피고의 총수익액만을 입증하면 된다. 피고는 비용과 공제액 주장에 대한 모든 사항을 입증하여야 한다. 손해를 평가함에 있어서 법원은 사건의 정황에 기초하여, 실제 손해액의 세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으로 판명된 액수 이상의 액에 대해 판정할 수 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해 승소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비용과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케 할 수 있고, 또한 본 장하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위가 비영리 교육, 과학, 조사기관, 도서관, 기록보관소 혹은 그 업무의 범위내에서 행동한 그러한 기관들의 고용인, 대리인의 불성실한 행동에 의해 일어났는지를 알아내는데 든 비용 또는 수수료를 지급토록 할 수 있다.

(e) 만일 피고가 비영리적인 교육, 과학, 조사기관의 업무 범위내에서 행하는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라면,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본 장에서 허용된다고 믿었고 또한 그 믿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조 (d)항의 재정적 구제를 전체적으로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f) 미국정부에 대한 소송

본 조 (b)항과 (c)항은 미국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 주정부기관에 대한 구제

본 장에 의한 구제는 적용가능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정부기관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다.

제 1207조 형사 범죄와 벌칙

(a) 침해

- (1) 일반적으로- 고의로 제1202조를 침해하고
 - A)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업적인 이익 혹은 재정

상의 이익을 위해 행하였거나

B) 그 정보를 수집·구성하거나 유지한 자에게 1년이내의 기간 동안 10,000달러 이상에 달하는 손실이나 손해를 입게 한 자는 본 조 (b)항에 규정된 벌에 처한다.

(2) 예외적으로- 본 조는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비영리 교육, 과학, 조사기관,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b) 벌칙

본 조 (a)항에 규정된 범죄는 250,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본 조 (a)항에 규정된 범죄를 두 번 또는 계속하여 범한 때에는 500,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208조 소송에 대한 제한

(a) 형사 소송 절차

소송의 원인이 발생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본 장에 의한 형사소송절차를 밟지 못한다.

(b) 민사 소송

소송의 원인이 발생하거나 소송 청구가 가능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본 장에 의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c) 추가적인 제한

정보 집합물의 일부가 추출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본 장의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의 투자가 있은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한 후에는 정보 집합물의 전부 혹은 실질적인 부분의 추출 또는 이용이 있어도 이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적 또는 민사적 소송이 제기될 수 없다.

SECTION 3. 수정 시행

title 17에 속한 각 장들의 목차는 마지막에 '2001'이 추가됨으로써 수정된다.

SECTION 4. Title 28의 수정 시행

(a) 지방법원관할권

title 28의 제1338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 상기한 조항의 제목 부분 중 '상표' 뒤에 '정보 집합물의 부정 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2) 상기한 조항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을 추가한다.

(d) 지방 법원은 title 17의 제12장에서 일어나는 정보 집합물의 부정 이용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일차적 관할권을 가질 것이다. 그러한 관할권은 주법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주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그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청구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어떠한 법원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b) 수정 시행

title 28의 제85장을 위한 각 조의 목차에서 제1338조와 관련된 항목은 '상표' 뒤에 '정보집합물의 부정이용'을 삽입함으로써 수정된다.

(c) 연방 소송 청구 관할 법원

title 28의 제1498조 (e)항은 'title 17의 제9장' 뒤에 '과 title 17의 제12장에 의한 정보의 집합물에 부여된 보호에'를 추가함으로써 수정한다.

SECTION 5. 시행일

(a) 일반적으로 이 법과 이 법에 의해 수정된 조항은 이 법의 제정과 동시에 발효하며,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 적용된다.

(b) 영향을 받지 않는 선행 행위

어느 누구라도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자신 또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승계인에 의해 정보 집합물로부터 합법적으로 추출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의 Section 2에 의해 첨가된 title 17의 제12장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